

청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347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윤현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인
변론 종결 2020. 12. 11
판결 선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와 B(C생)이 2019. 2. 28. 체결한 30,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차 6858호로 구상금지급 명령을 신청 하여 2012. 12. 20. 위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71, 566, 876원 및 그중 571, 492, 363원에 대하여 2012 . 10. 23. 부터 2012 . 11. 30. 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3 . 1. 21. 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 1. 8. 확정되었 다.

나. B은 2018 . 11. 16. D에게 자신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F호(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1억 3, 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B 은 2019 . 2. 25. D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잔금 80, 322, 455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8. 피고에게 30, 000, 000원을 지 급하였다.

다. B은 2019. 2. 25. 무렵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청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 이 피고에게 30, 000, 000원을 지급하였을 당시 원고는 B 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구상 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1)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 계약이

성립하였다 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 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 한다는데에 관 한의 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 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참고).

2)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가 B 의 배우자인 점, 피고가 B 으로부터 3, 000만 원을 지급받을 만한 별다른 권원 이 없 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의 증여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2019 . 2. 28. 피고에게 30, 000, 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B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위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 행위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B과 피고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3, 000만원 의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